◇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158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 신고 등의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임원 명부에 대해 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이전 법인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직변경 신고확인증·인가증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택지개발사업 또는”을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못한”을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로, “못한”을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자

제40조제2항 중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을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중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월평균소득”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41조제4항 중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하여”를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임신 또는 입양하여”로, “입주시까지”를 “입주할 때까지”로 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20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5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7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제46조제3항제1호 중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을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9의2.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거주기간의 산정에 관한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
2.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제37조의 개정규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공급요건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 등으로 완화하는 한편,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76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다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20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시 입주자 자격에 관한 별표 6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25퍼센트로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분양가격을 6억원 이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요건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 이하 등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